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행위 신고

이제 인증원으로

신고번호

053-601-6455

053-601-6456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
인증등록정보망
불법제품
신고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 운영

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쇄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인증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신고창구입니다.

신고창구
이용방법

신 고 자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 가능

※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 통합인증 홈페이지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불법제품 신고)

신고대상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신고내용

-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하단 사진 참고)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및 훼손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는 행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제조·수입·판매자
사용자

하수도법 제76조(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불법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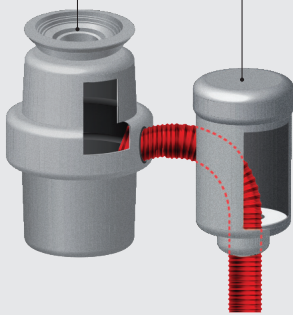
분쇄부



회수통 제거

분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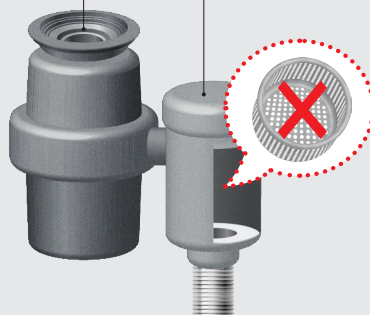
회수통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분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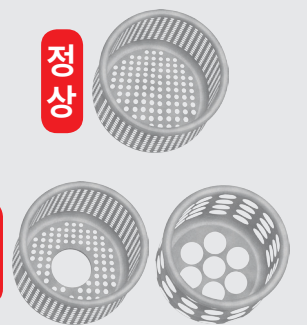
회수통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정상

폐망



내부 거름망 훼손

공정하고 투명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